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

- 돈이 되는 청구범위 작성부터
글로벌 특허확보까지 -

- 01 지식재산권, 왜 필요할까?
- 02 특허 가능성을 결정하는 첫 단계 - 선행기술조사
- 03 무엇을 보호받을 것인가? -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 04 발명을 실수로 공개했다면?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05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고, 발명은 1년간 보완 - 국내우선권
- 06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 - 청구범위 유예, 임시명세서
- 07 특허심사, 빠르게 받으려면? -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 08 심사를 늦게 받고 싶다면? - 심사청구, 심사유예
- 09 의견제출통지서란? - 심사관과의 소통 전략
- 10 '1발명 1특허출원 원칙', 그러면 남은 발명은? - 분할출원
- 11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 재심사, 거절결정불복심판
- 12 해외 특허를 위한 선택지 - 개별국 출원 vs 한 번에 출원일 확보
- 13 꼭 알아야 할 해외 특허제도

★ 지식재산처 주요 지원사업



지식재산처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01

지식재산권, 왜 필요할까?

스타트업 'AI 딥테크'의 회의실, AI 물류 자동화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여 들뜬 분위기에 박 변리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건다.

등장인물 소개



김 대표 / 34세

항상 글로벌 진출부터 외치는 추진력 끝판왕



이 박사 / 35세

개발만 하면 눈빛이 반짝이는 연구 몰입형 인재



박 변리사 / 29세

“특허 없으면 자선사업”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지식재산권 지킴이



정말 ‘대박’이네요.

이 정도면 대기업 납품은 물론이고, 해외진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어요. 다음달 CES에 출품하면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시죠.

잠깐만요, 대표님! 그렇게 기술을 먼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특허로 ‘보호’되지 않은 기술은 ‘자산’이 아니라 ‘자산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스타트업에게도 특허가 꼭 필요할까요?

특허를 보유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특허를 보유하면 경쟁사의 유사기술 출시를 막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라이선스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또한 투자 유치나 M&A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특허를 출원하려다 절차가 복잡해 포기한 적이 있어요.

해외출원 비용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 부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절차나 비용이 부담된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고, 공익변리사센터(02-6006-4300)나 전국 지식재산센터(1661-1900)를 통해 기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디자인이나 상표 등 특허 외 지식재산권을 함께 확보한 기업이 투자 유치와 매출 성장 측면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다양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경영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은 특허만 출원한 경우 6.4배, 특허와 상표를 함께 출원한 경우 10.2배 증가하며, 투자금 회수(엑시트) 성공 가능성은 특허만 출원한 경우 2.4배, 특허와 상표를 함께 출원한 경우 최대 3.2배까지 상승합니다.

* EUIPO·EPO, "Patents, trade marks and startup finance", 2023

- 또한,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은 미보유 기업에 비하여 종업원 1인당 매출이 20.9% 높고,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모두 보유한 경우 1인당 매출이 최대 32.7%까지 증가합니다.

*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성과 분석", 2025

지식재산권 수익화 사례

USB메모리 덮개 특허

- ◆ 중견기업 'H'사가 USB 메모리 회전덮개 기술로 국내실용신안('02) 및 미국특허('05)를 확보, 이후 국내 IP 수익화기업 'I'사가 'H'사의 해외특허를 매입하여 해외기업 'K'사를 상대로 분쟁에서 승소

- ◆ **수익화 규모** 약 180억 원

➔ 단순해보여도 시장을 지배하는 결정적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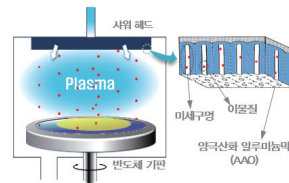


반도체 양극산화막 특허

- ◆ 반도체 강소기업 'P'사는 이물질 흡착을 방지하는 양극산화막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여, 글로벌 반도체 'M'사와 독점 납품 계약 및 50억 투자 유치

- ◆ **수익화 규모** 매출 약 200억 원 증가(100억 → 300억)

➔ 글로벌 공급망을 여는 핵심 열쇠



통신 표준 특허

- ◆ 중소기업 'P'사는 LTE, 5G 등 통신 분야의 표준 특허를 기반으로 미국·중국의 기업들을 상대로 침해소송에서 승소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 ◆ **수익화 규모** 10여 개의 글로벌 ICT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약 200억 원 매출 달성

➔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강력한 무기



02

특허 가능성을 결정하는 첫 단계 - 선행기술조사



특허의 필요성은 잘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특허를 출원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거든요.
기존 기술을 잘 파악한 후 우리 기술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정부 서비스인 **KIPRIS**를 활용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변리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어요.

선행기술조사

- 내 아이디어가 기존 특허 또는 이미 공개된 기술과 유사한지 확인하여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이미 공개된 기술과 중복되지 않도록 **권리범위(청구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출원비용 및 시간낭비를 방지



선행기술 정보검색 사이트: KIPRIS (www.kipris.or.kr)

- 지식재산청이 운영하는 **무료 지식재산 정보검색 서비스**로, 미국, 유럽 등 국내외 29개국(기관)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정보를 원스톱으로 열람 가능



특허 외에도 모든 공개정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KIPRIS를 활용한 검색뿐만 아니라 논문, 보고서, 연구사업 결과물 등 폭넓은 조사가 필요

사례로 배우는 선행기술조사



KIPRIS 검색창에 'AI 기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검색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1만 건이 넘어서, 전부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으로 검색 범위를 한정하거나, '센서 융합', '분산 제어' 등 핵심요소로 검색해보세요.
기술 분야에 관한 특허분류를 지정하는 방법도 유용해요. 이렇게 하면
관련성이 높은 선행기술을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요.



제 아이디어랑 유사한 특허출원을 찾았어요.
'A'사가 3년 전에 출원한 건인데 등록 되지는 않았고, '공개' 상태네요.
등록되지 않았으니 큰 위협은 아니겠지요?

그 점이 바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특허는 '등록'이 아니라 '공개'되는 순간부터 선행기술로 인정되거든요.



앗, 그러면 어떡하죠?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우리 발명의 기술적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서류 준비
부탁드려요.



주의사항

- **특허출원의 함정:**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공개'된다. 공개된 출원은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전 세계 어디서든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된다.

03

무엇을 보호받을 것인가?

-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출원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청구범위는 보호받을 권리의 범위이고, 발명의 설명은 그 권리범위를 인정받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이더라도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권리로 보호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청구범위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면 유리하겠네요?

아니요. 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권리범위는 좁아지고, 경쟁사가 우회하기 쉬워져요. **청구범위는 상세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핵심만 담아야** 해요. 특히 침해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구성요소를 넣는 순간 경쟁사가 회피하기** 쉬워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발명의 설명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청구범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발명의 설명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특히, 특허의 보호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 변화 흐름을 예측하여 다양한 실시예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 비교

구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역 할	발명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기술적 설명을 제공	특허의 법적 권리범위를 정의
법적효력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참고자료	침해·분쟁에서 판단의 기준
작성 방식	배경기술, 실시예, 효과 등 기술적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히 기재	적절한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작성 필요
리스크	기술 설명이 부족하면 청구범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거절 위험이 높고, 너무 좁으면 경쟁사가 쉽게 회피 설계할 수 있음

사례로 배우는 청구범위 작성



청구범위에 핵심만 담아야한다는 것은 이해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감이 잘 안 오네요.



청구범위는 독립항과,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독립항은 발명의 핵심을 넓게 보호하고,
종속항은 세부구성 요소를 보호하는 방식이 바람직해요.
예를 들어, 우리 기술은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볼 수 있어요.

[청구항1] (독립항): (중략), 물류 환경에 관한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센서부, 외부 서버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통신부, 상기 센서 데이터에 기초하여 물류 이동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AI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처리부를 포함하는 AI 기반 물류 자동화 시스템

[청구항2] (종속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부는 라이다 센서와 비전 센서의 융합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3] (종속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부에 의해 결정된 물류 이동경로에 따라 물류 장비 또는 운송 수단의 이동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면 독립항이 거절되더라도,
종속항으로 권리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본 사항

- ☐ 청구범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작성하여 권리를 좁히지 않았는지?
- ☐ 발명의 설명에 없는 내용을 청구범위로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 ☐ 해석이 어려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 ☐ 해외 출원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독립항의 점검

- ☐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가 반영되어 있는지?
- ☐ 청구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서 신규성·진보성 거절 위험이 없는지?

종속항의 점검

- ☐ 발명의 다양한 구현 형태와 선택적·대안적 구성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지?
- ☐ 향후 시장 변화 흐름을 예측하여 여러 실시형태에 대해 보호하고 있는지?

강한 특허는 협업에서 나온다



청구범위를 작성해보고 있는데, 역시 쉽지 않네요.
그냥 변리사님께 전적으로 맡길까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술의 핵심을 잘 아는 사람은 연구자거든요.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와 연구자의 협력**,
그리고 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CEO의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연구자와 변리사의 협력이 강한 특허를 만듭니다

- 많은 기업이 비용이 저렴한 곳 위주로 변리사를 선택하거나, '자료만 주면 되겠지'라며 청구범위 논의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핵심기술이 청구범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뒤늦게 보완하려고 하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허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쉽게 무력화되는 약한 특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선택지들이 넓은 청구범위를 설계하는 기반이 되므로, 단순히 '지금 개발한 형태' 뿐만 아니라, 대안이나 변형 가능성까지 모두 변리사에게 공유할 것을 권장

	연구자	변리사
역할	① 발명의 핵심 차별점 제시	① 기술을 법률 언어로 구조화
	② 기술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제공	② 심판·소송까지 고려한 청구범위 설계
	③ 경쟁사의 회피 가능성 검토	③ 해외특허제도를 고려한 청구범위 조정
	④ 다양한 구현 형태에 대한 정보제공	④ 기업전략을 고려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04

발명을 실수로 공개했다면? - 신규성 상실의 예외



큰일이에요. 지난달 학회에서 우리 기술을 이미 공개해버렸는데 이제 특허는 못 받는 건가요?

다행히 방법이 있어요. 한국 포함 주요국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가 있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신규성 상실의 예외란?

• 특허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기술에만 부여되므로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요건

- ① 발명자가 직접 공개한 경우(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개된 경우 제외), 또는 발명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
- ②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 할 것
- ③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취지와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국가별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출원 전 공개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

주요국 규정 비교

항목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기 간	12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6개월
공지형태	모든 형태 (특허공보에 의한 공개 제외)	모든 형태 (특허공보에 의한 공개 제외)	모든 형태	일부 국제전시회	중국정부가 인정한 (a)국제전시회 (b)컨퍼런스
취지기재	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특허 서류는 늦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특허는 출원일을 빨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경쟁사가 먼저 유사한 기술로 특허를 신청하거나, 공개해버리면 우리가 특허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출원부터 하고, 나중에 보강해야겠네요.

보강하는 건 좋지만, 처음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어요. 즉, 새로운 실험데이터나 개량 기술 등은 추가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러면 기술이 발전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다시 처음부터 출원해야 하나요?

그럴 땐 **국내우선권 제도**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개량발명도 관리할 수 있어요. 개발이 완료된 기술(A)을 먼저 출원해서 출원일을 확보하고 나중에 개량발명(B)을 함께 출원하면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 A는 **처음 출원일** 기준, B는 **나중 출원일** 기준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 제도

- 발명자가 기존출원을 기반으로 개량발명이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로 출원할 때, 기존 출원에 이미 포함된 부분은 선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후출원에서 추가된 부분은 후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요건

- ①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
- ②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
- ③ 출원 시 선출원이 이미 포기, 취하, 무효, 거절 확정, 특허등록 상태가 아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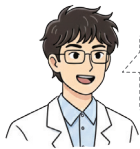
06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 - 청구범위 유예, 임시명세서



출원서류 준비는 마무리 단계인데, 청구범위가 너무 고민되네요.
이러다 출원일이 늦어질까 걱정이예요.

그럴 때는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출원서류의 다른 부분을 먼저 완성해서 제출하면 출원일을 바로 인정받을 수 있고, 청구범위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안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출원서류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방법이 없겠죠?
개발 마무리 단계인 기술이 하나 있는데,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요.

방법이 있어요.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논문이나 연구노트처럼 형식이 자유로운 문서를 바로 제출해서 출원일만 먼저 확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년 2개월 안에 정식 서류로 보정하면 됩니다.



청구범위 유예제도

- 청구범위 없이 출원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인정해주고, 청구범위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년 2개월이 경과되면 출원이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기간 준수 필수

임시명세서 제도

- 출원서류(명세서) 작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출원하는 제도



- ① 임시명세서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보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실시가능요건 등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으로 거절될 위험도 높으니, 임시명세서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도록 작성 필요
- ②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서류로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자동 취하되므로 기간 준수 필수
- ③ 신규사항을 추가하고 싶다면 임시명세서 출원에 기초하여 별도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1년 이내에 제출



덕분에 잘 신청했어요. 그런데, 특허 심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년 이상 걸려요. 특히 AI 분야는 신청 건수가 많아 더 길어지기도 하고요.



네? 저희는 해외 바이어가 '특허'를 요구하고 있어서 급한데요.
더 빨리 심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2~3개월 안에 첫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수출기업이라면 초고속심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초고속심사를 신청하면 1~2개월 안에 최종 결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선심사 제도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3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대상:** 첨단기술 출원, 벤처기업 출원, 자기 실시 등 총 19종

①방위산업, ②녹색기술, ③4차 산업혁명 관련, ④첨단기술 관련, ⑤수출촉진, ⑥국가·지자체, ⑦벤처기업, ⑧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⑨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⑩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 ⑪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⑫조약우선권주장의 기초, ⑬한국 PCT 국제조사 후 국내단계 진입, ⑭자기실시, ⑮외국청에서 등록가능 의견을 받은 출원, ⑯재난 관련, ⑰제3자 실시, ⑱지역특화 사업 관련, ⑲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개발 관련

초고속심사 제도

• 우리기업의 수출 및 해외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우선심사보다 빠른 1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

• **대상:** ①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또는 ②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 다만, 수출계약서 등 수출관련 실적이 없더라도 지식재산처 수출관련 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에 참여한 경우도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단, 이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 **규모:** ① 및 ②의 사유 각각 연간 2,000건 한도

심사 소요기간 비교

	1차 심사	중간서류 심사	합계
우선심사	2개월의 말일	4개월의 말일	6개월 ^a
초고속심사	1개월	1개월	2개월



그러면 반대로, 혹시 심사를 늦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작년에 출원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 사업화 여부가 아직 애매해서요.



네, 가능해요.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를 신청해야지만 심사가 시작됩니다.
출원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3년보다 더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럴 때는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출원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사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지요.

심사청구 제도

- 특허출원 후 바로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시작하는 제도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출원이 자동 취하되므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34~35개월 시점에는 심사청구 여부 확인 필요

심사유예 제도

- 출원일은 유지하면서 심사 시점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로 미룰 수 있는 제도
- **신청기한**: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유예시점**: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 ~ 출원일로부터 5년



바이오, 의약 등 임상 및 규제 승인 일정이 불확실한 경우,
또는 사업화 여부가 불확실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 추천



의견제출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특허가 거절된 건가요?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관의 1차 검토결과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하거나 설명해야 등록 받을 수 있는지 소통하는 과정이고요.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심사관과 소통하면 등록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문서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볼 방법은 없나요?

필요하다면 심사관 면담을 요청해 직접 설명할 수 있어요.
보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 전략

- **보정서:** 심사 과정에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등 출원서류를 보정하여,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함으로써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 **의견서:**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선행기술과의 대비, 청구범위의 해석 또는 관련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한 출원인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의견서만 제출할 수도 있으나, 보정서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

소통창구

특허고객 상담센터(1544-8080)

-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재권 제도, 출원·등록 방법, 전자출원 절차 등에 대한 전문 상담사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

심사답변 예약 서비스

- 출원인-심사관 간 공식 소통창구로, 심사 관련 비교적 간단한 사항에 대해 심사관에게 문의를 남기고 원하는 시기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심사관 면담(보정안 리뷰, 재심사 면담)

- 심사관의 거절이유와 청구범위의 보정방향 등 실체적 사항에 대해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
- 유형: ① 보정안 리뷰: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신청
② 재심사 면담: 이미 거절결정된 출원을 재심사 청구하기 전에 신청



〈특허로(www.patent.go.kr)〉-신청/제출-면담신청/정보제공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의견제출통지서 中〉

제1항은 AI 기반 물류 최적화 방법에 관한 발명(A)이고, 제2항은 로봇용 센서에 관한 발명(B)이고, 제3항은 배터리 제어방법에 관한 발명(C)입니다. A, B, C 발명들의 기술적인 특징이 상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발명 1특허출원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출원은 특허법 제52조에 의해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아니, 세 가지 다 우리 핵심 기술인데, 하나만을 선택하라니요?
나머지 두 개의 발명은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나머지 두 개의 발명에 대해 분할출원을 하시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분할출원은 기존 출원과 동일한 출원일을 적용받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술이나 시장 성숙도에 따라 우선심사나 심사유예를 함께 활용하여 각 출원의 심사시점을 다르게 조절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분할출원

- 하나의 출원에 여러 발명이 있을 때 이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분할출원하면,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원출원과 동일한 출원일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하는 제도
- 신청시기: ① 보정가능 기간 이내
② 거절·등록·거절결정취소심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할출원을 활용하면 발명별 사업화 단계에 맞추어 심사 시점과 권리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다수의 특허를 통해 비즈니스별 라이선스가 가능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용이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 재심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관으로부터 특허거절결정을 받았어요.
이제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활용하면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거나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 다투어 볼 수 있어요.



재심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심사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해서 다시 한 번 심사관의 심사를 받아보는
절차이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상위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입니다.
재심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재심사를 먼저 신청한 뒤 그래도 등록을 못 받은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신청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재심사 제도

-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다시 한 번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1회만 신청 가능)

*등록결정 받은 경우에도 설정등록 이전에 재심사 신청 가능

- 신청시기:**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심사 보정은 청구범위 감축·정정·명확화 등으로만 보정범위가 제한되므로,
재심사 면담을 활용하여 심사관과 보정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효과적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 신청시기:**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추가연장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 단계에서는 청구범위 보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12

해외 특허를 위한 선택지 - 개별 국가 출원 vs 한 번에 출원일 확보



한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허는 국가별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조약우선권 출원과 PCT 국제출원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조약우선권 출원은 한국에 먼저 출원한 뒤 12개월 내에 해외 각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현지 변리사를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12개월이면 생각보다 촉박하네요. PCT 국제출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전 세계에서 동일한 출원일을 확보하고, 국가별로 진입하는 시점은 30개월(또는 31개월)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회사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분	조약우선권 출원(파리루트)	PCT 국제출원
개 념	한국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각국에 직접 출원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158개 PCT 체약국에 대한 출원일을 확보한 후, 각국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선택
기 한	우선일(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이내 * 국가별 상이
초기비용	해외출원과 동시에 국가별 번역·대리인 비용이 발생	초기에는 PCT 국제출원 비용만 부담하고, 국가별 번역·대리인 비용은 30개월(또는 31개월)까지 유예가능
특 징	비교적 신속한 권리 확보 가능	최대 30개월(또는 31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통해 사업화 대상 국가를 전략적으로 결정 가능
추천대상	대상 국가가 명확한 경우,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대상 국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비용 지출 시기를 늦추고 싶은 경우



이번 건은 PCT 국제출원으로 진행하시지요.
그런데, 해외출원 절차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해외출원은 나라별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국의 심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특허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wipo-navi.or.kr)-해외지재권-글로벌IP 가이드북’에
주요국의 출원·심사제도가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꼭 알아야 할 제도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 동일한 발명에 대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효 과: 해외에서의 특허 심사처리 기간 단축 및 특허 등록률 향상
- 시행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40개 국/기관

요건

- ①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PCT 국제출원 포함)
- ②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더 좁은 청구범위를 신청할 것



우선심사, 초고속심사를 통해 한국에서 특허권을 신속하게 확보한 이후,
PPH를 신청하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에 가장 유리

보다 상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처(www.moip.go.kr)>-
지식재산제도-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 제도-특허심사하이웨이 참조



2 유럽: 단일특허(Unitary Patent, UP)

- 유럽 개별국 등록절차 없이 단 하나의 특허로 통합특허법원협정(UPCA)에 가입한 회원국 전체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 → 권리 행사·이전·소멸 등에 대해서도 하나의 권리로 취급
- **참여국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8개 UPCA 비준국
- **신청 방법:** 유럽특허 등록공보 공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일특허 신청서 제출

기존 유럽특허와 EU 단일특허 제도 비교

구분	유럽특허(EP)	단일특허(UP)
적용 국가	39개 유럽특허협약 체결국	18개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국
출원·심사	유럽특허청(EPO)에서 출원, 심사 업무를 수행	
특허효력	별로도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	비준국 전체에서 효력
등록절차	국가별로 등록 절차 진행	유럽특허청(EPO)에서 일괄 진행
등록료	3개 이하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 단일특허 등록료보다 저렴	EU 4개국 등록료 수준
분쟁 관할	각국 법원	통합특허법원



단일특허제도 시행 이후에도 출원인은 유럽특허와 단일특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단일특허는 하나의 권리로 취급되어 한 번의 무효심판으로 UPCA 비준국 전체에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 필요

3 미국: 정보공개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 발명자, 출원인, 대리인 등 출원 및 심사에 관련한 자가 특허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IDS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고의로 정보를 숨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허권 행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작성이 필요

제출시기 및 요건

시기	제한 사항
최초심사통지 이전	수수료나 횟수 제한 없이 제출 가능
최초심사통지~ 최종거절이유통지/등록결정통지	정보를 안 지 3개월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3개월 경과 후에는 수수료와 함께 제출 가능
최종거절이유통지/등록결정통지 ~등록료 납부	정보를 안 지 3개월 이내에는 수수료와 함께 제출 가능 3개월 경과 후에는 계속심사청구(RCE) 신청 필요

지식재산처 주요 지원사업

창출	IP 디딤돌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특허출원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IP 기반 창업 교육 및 상담을 제공
	IP 나래	지역 초기 창업기업(7년 이내)을 대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IP 사업화 전략 등 IP 기술 경영 컨설팅을 제공
	IP-R&D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지재권전략전문가 및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출원 권리화 비용,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
활용	IP 거래지원	지식재산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에 수요 발굴, 중개 협상, 사후 지원·관리 등 전문가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
	IP 사업화 연계 평가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사업화 타당성 분석, 기술거래 등을 위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보호	해외 IP센터	해외 40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분쟁 예방, 위조상품 확산 방지 등에 대한 초동대응을 지원
	특허분쟁 대응지원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
	특허분쟁 위험경보	기업의 주력 기술 분야의 해외특허분쟁 동향, 관심특허 피인용 정보, 분쟁 고위험특허, 분쟁빈발 해외기업 등 맞춤형 분쟁 위험 정보를 제공

보다 상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처(www.moip.go.kr)>-
정책/업무-지원시책-지원사업조회 참조



[유의사항]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자료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